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97542(본소), 2021나97559(반소) 판결 [계약금 지급
청구의 소 · 계약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97542(본소), 2021나97559(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9. 30 선고 2020가단231415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기, 이정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현

담당변호사 오세운

변론종결 2022. 7. 14.

판결선고 2022. 8. 1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9. 30. 선고 2020가단231415(본소),
2021가단200234(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부른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부른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8. 2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5.부터 2021. 9.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안의 개요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주장

1) 피고는, 피고가 2020. 8. 3.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정한 200,000,000원의 계약금 중 15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공사 완료시기인 2020. 11. 30.까지도 공사를 개시하지 않았고, 현장소장을 D에 등록하고 원고가 D의 이사로 등재되기로 하는 약정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한 이상, 피고의 2020. 8. 23.자 내용증명 우편의 도달을 통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은 해제되었고 주장하면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1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갑 제1, 2,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애초 D이 시공하던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자금난으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중단되었고, ② 이에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위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2020. 7. 31. G로부터 700,000,000원(이자 연 18%, 변제기 2021. 7. 31.)을 차용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까지 하였으며, ③ 앞서 본 원 · 피고 및 D 3자간 합의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이 바로 위 차용일 당일인 2020. 7. 31.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④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계약금 지급일을 계약 체결일인 “2020. 7. 31.”로 명시한 한편, 위 3자간 합의서에서는 원고의 공사 착수 시기에 관하여 ‘2020. 8. 1.부터는 현 시공사(원고)가 상기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바’라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및 재개 경위, 피고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원고의 기여와 그 동기, 피고가 원고의 도움으로 700,000,000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된 당일 이루어진 3자간 합의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경위, 위 합의나 계약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원 ·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위와 같이 차용한 자금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리라는 의사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또는 원고가 중단된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는 데 필요한 선급금으로서 “피고가 2020. 7. 31.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피고의 위 200,000,000원 지급의무는 피고가 앞서 언급한 원고의 (불이행) 의무(이 사건 공사 착공의무, 현장소장을 D에 등록하고 원고를 D의 이사로 등재할 의무)에 앞서 반드시 선이행되어야 하는 핵심적 채무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는 2020. 8. 3.에 이르러 약정한 계약금 중 15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가 쌍무계약인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 측 후속 의무에 대응하는) 선이행 채무를 불이행한 이상, 원고는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536조 제1항). 그리고 이러한 원고의 이행거절권능 행사가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5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673조).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피고의 의사가 담긴 피고의 2021. 2. 2.자 준비서면이 2021. 2. 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21. 2. 3. 해제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1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제1심판결 제13면 제18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친다.

3. 결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국현, 판사 김광진, 판사 이효진